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64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용혜인 · 장종태 · 정혜경
한창민 · 소병훈 · 윤종오
서미화 · 손 술 · 차규근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의 양대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려고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려는 주민 복지조차도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장려해야 할 주민 복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 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의 4개 전국 협의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보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변경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조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30명”을 “34명”으로 한다.

법률 제2106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각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각 1명

제2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재정 지원·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6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 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 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 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 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교육부장관, 보건복 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u>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	법률 제21065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5 명----- ----- -----34명- -----. ② ----- -----<u>교육부장관, 보건복 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u> <u>「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u> <u>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u> <u>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각 1</u> <u>명</u>-----. ③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u> <u>및 제4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u> <u>적 협의체의 대표자 각 1명</u>

